# 

통상임금 소송 변론기일 방청후기

# 매수(유지)

### 목표주가: 44,000원(유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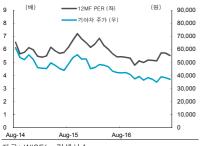
#### Stock Data

| KOSPI(7/13) | 2,409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|
| 주가(7/13)    |               | 37,000 |
| 시가총액(십억원)   |               | 14,998 |
| 발행주식수(백만)   |               | 405    |
| 52주 최고/최저가  | 44,800/34,100 |        |
| 일평균거래대금(6   | 36,881        |        |
| 유동주식비율/외국   | 62.0/38.2     |        |
| 주요주주(%)     | 현대자동차 외 4 인   | 35.6   |
|             | 국민연금          | 7.0    |

#### 주기상승률

|          | 1개월   | 6개월    | 12개월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절대주가(%)  | (5.6) | (8.8)  | (11.6) |
| 상대주가(%p) | (7.1) | (24.8) | (31.7) |

#### 12MF PER 추이



자료: WISEfn 컨센서스

# 소송 진행상황

우리는 7월 13일에 열린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19차 변론기일을 방청했다. 기아차는 노조 가 2011년에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진행 중이다(2017/5/24 '6년을 끌어온 악재' 참조). 재판부는 올해부터 변론기일 횟수를 늘리고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 는 등 재판을 마무리 짓기 위해 노력 중이다. 당초 7월 13일이 최종변론기일이 될 예정이 었으나 추가적인 쟁점 및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7월 20일 13시 50분에 변론기일이 추가 로 잡혔다. 재판부는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집중심리 기간을 감안해 하계 휴정기간(2주) 이후인 8월 17일을 선고일로 계획 중이나. 만에 하나 20일 이후에도 다툼의 여지가 여전 히 남을 경우 동계 휴정기간 이후인 내년 1월에 선고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.

### 핵심 쟁점

원고인 노조측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넓어진 통상임금의 범위에 맞춰 증액분을 추 가 청구하고 있다. 반면에 피고인 사측 대리인은 그 동안 기아차 임금산정의 기준으로 사 용되던 통상임금의 범위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요건보다 넓기 때문에, 이 부분을 공제 하고 통상임금 추가분을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. 이 경우 노조측 청구금액의 범위는 줄어들게 된다. 결국 법원이 임금항목들 중 어느 부분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지와 3년 소급적용을 인정할 지가 관건이다.

#### 향후 저맛

통상임금 재판은 8월 17일이 선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. 13일 변론기일에서 재판 부와 사측 대리인, 노측 대리인 모두 판결이 늘어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비쳤기 때문이다. 기아차의 통상임금 판결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임단협 일정 및 방향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. 통상임금 비용을 예단할 수는 없으나 노조측의 청구금액(6.657억원)이 대부 분 인정되고 동시에 3년 소급까지 되는 시나리오는 배제하고 있다. 이 경우 기아차는 이 익대비 통상임금의 상대적 부담이 현대위아보다 더 커지는데(판결 시점 기준) 현재 실적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 선고기일이 확정 될 경우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단기 주가 반등이 예상된다.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4,000원을 유지한다(12MF PER 7배).

김진우, CFA 3276-6278 jinwoo.kim@truefriend.com

**박성준** 3276-6161 sungjun@truefriend.com

|       | 매출액    | 영업이익  | 순이익   | EPS   | 증감률    | EBITDA | PER E | EV/EBITDA | PBR | ROE  | DY  |
|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
|       | (십억원)  | (십억원) | (십억원) | (원)   | (%)    | (십억원)  | (x)   | (x)       | (x) | (%)  | (%) |
| 2015A | 49,521 | 2,354 | 2,631 | 6,559 | (11.3) | 3,777  | 8.0   | 5.4       | 0.9 | 11.3 | 2.1 |
| 2016A | 52,713 | 2,461 | 2,755 | 6,873 | 4.8    | 4,148  | 5.7   | 3.7       | 0.6 | 10.8 | 2.8 |
| 2017F | 52,148 | 2,101 | 2,396 | 5,976 | (13.0) | 3,879  | 6.2   | 3.8       | 0.5 | 8.7  | 3.2 |
| 2018F | 55,406 | 2,438 | 2,668 | 6,654 | 11.3   | 4,487  | 5.6   | 3.4       | 0.5 | 9.1  | 4.1 |
| 2019F | 58,959 | 2,594 | 3,011 | 7,509 | 12.8   | 4,864  | 4.9   | 3.1       | 0.5 | 9.7  | 4.9 |

주: 순이익, EPS 등은 지배주주지분 기준

# <표 1> 주요 업체별 통상임금 소송현황

| 기업      | 현황(기업입장)     | 1 심 판결일(합의일) | 비고  |
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|
| 갑을오토텍   |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| 2013-12-18   |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해당. 그러나 정기상여 3년치 소급분에 대한 임금 청구는 제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르노삼성    | 1 심 승소       | 2015-02-05   | 상여금, 문화생활비 등은 통상임금이 아니라 고정성 없는 임금에 불과   |
| S&T 모티브 | 노사합의로 종결     | 2015-06-15   | 정기 상여금 700% 중 600%를 통상임금에 포함. 과거 3년간 소급적용   |
| 한국타이어   | 노사합의로 종결     | 2015-08-27   | 정기상여금 600%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4.9% 임금인상. 기본급도 3.9% 인상해 총<br>실질임금 8.84% 인상                 |
| 현대차     | 1 심 승소       | 2015-11-27   | 노조 대법원 상고   |
| 현대모비스   | 2심 승소        | 2015-11-27   | 현대차와 같이 적용  |
| 만도      | 1 심 승소       | 2016-01-21   | 119 명이 제시한 소송. 패소 시 1,400 억원 추가 부담 예상됐었음  |
| 현대위아    | 1 심 패소       | 2016-02-18   | 872 억원 층당금 15년 4 분기에 반영(생산직 1,093 명의 3년치 소급분 443 억원과 그<br>지연이자 및 이후 임금). 항소심 진행 중 |
| 금호타이어   | 노사합의로 종결     | 2016-02-20   | 16년말 임금피크제 시행, 임금인상 정액 1,180 원+정률 2.76%(평균 4.6%), 일시금<br>300 만원 지급                |
| 한온시스템   | 1 심 패소       | 2016-07-01   | 344 억원 추가로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판시   |
| 넥센타이어   | 노사합의로 종결     | •••          | 24년 간 무분규   |
| 기아차     | 1 심 재판 중     | 3Q17 예상      |   |

자료: 언론종합, 한국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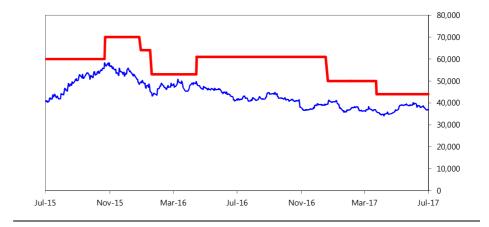
# <표 2> 기아차 통상임금 재판 진행상황

| 일자         | 내용   | 결과     |
|------------|--|--------|
| 2012.03.08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1:3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2.04.26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0:10), 추정기일(추정사유:체불임금 등을 산정)         | 기일변경   |
| 2014.04.17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1:3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4.06.12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0:3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4.07.10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4: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4.10.30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4:0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4.12.11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4:2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일변경   |
| 2015.01.22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4:2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일변경   |
| 2015.03.19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0:2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5.05.28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0:2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5.07.16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0:2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5.08.27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0:3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5.10.29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0:40), 추정기일(추정사유:감정,조회,촉탁등 결과 도착 대기) | 속행     |
| 2016.07.21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1: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6.09.29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1:40), 추정기일(추정사유:감정,조회,촉탁등 결과 도착 대기) | 연기     |
| 2017.02.09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1:4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7.03.30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1:4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7.05.25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0: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7.05.30 | 변론준비기일(민사법정 동관 375호 15:0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7.06.12 | 변론준비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호 15:0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변론준비종결 |
| 2017.07.13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호 15:3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속행     |
| 2017.07.20 | 변론기일(민사법정 동관 562 호 13:5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
자료: 서울중앙지법, 한국투자증권

####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경내역

| 종목(코드번호)    | 제시일자       | 투자의견 | 목표주가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|
| 기아차(000270) | 2015.07.21 | 매수   | 60,000 원 |
|             | 2015.11.04 | 매수   | 70,000 원 |
|             | 2016.01.11 | 매수   | 64,000 원 |
|             | 2016.02.01 | 매수   | 53,000 원 |
|             | 2016.04.27 | 매수   | 61,000 원 |
|             | 2017.01.02 | 매수   | 50,000 원 |
|             | 2017.04.05 | 매수   | 44,000 원 |



#### ■ 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2017년 7월 13일 현재 기아차 종목의 발행주식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당사는 기아차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(주식워런트증권)를 발행 중이며,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공급자(LP)입니다.

#### ■ 기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시장 지수 대비 주가등락 기준임

- 매 수 : 시장 지수 대비 15%p 이상의 주가 상승 예상
- 중 립 : 시장 지수 대비 -15~15%p의 주가 등락 예상
- 비중축소 : 시장 지수 대비 15%p 이상의 주가 하락 예상
- 중립 및 비중축소 의견은 목표가 미제시

#### ■ 투자등급 비율 (2017.6.30 기준)

| 매 수   | 중 립   | 비중축소(매도) |
|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78.9% | 20.3% | 0.9%     |

※최근 1년간 공표한 유니버스 종목 기준

#### ■ 업종 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해당 업종의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 시가총액 비중 대비 포트폴리오 구성 비중에 대한 의견임

- 비중확대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보다 높이 가져갈 것을 권함
- 중 립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권함
- 비중축소 : 해당업종의 포트폴리오 구성비중을 유가증권시장(코스닥)시가총액 비중보다 낮게 가져갈 것을 권함
-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,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할 수 없습니다.
-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.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-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